
입 법 정 보

2019-4호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의회 사무처
(수석전문위원실)



목 차



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4
2.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4
3.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관광체육부).....	5
4.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관광체육부).....	6
5.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6
6.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여성가족부).....	7
7.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7
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8
9. 숙련기술장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8
10.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9
11.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9
12.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
1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관광체육부).....	10
1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11
1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11
1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2
17.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2
18. 인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3
19.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3
20. 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4
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4
22.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5
23.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5
24.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16
25.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	16
26.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6
27. 물관리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안) (환경부).....	17
28.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8
29.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9
30.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방송통신위원회).....	19
3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방송통신위원회).....	20
32.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1

33. 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외교부).....	22
34.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22
35.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23
36.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방송통신위원회).....	23
37.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24
38.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25
3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6
4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7
41.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	27
42.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원자력안전위원회).....	28
43.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원자력안전위원회).....	28
44.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29
4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방송통신위원회).....	29
46. 농업통계조사 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30
46. 농업통계조사 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30
47.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30
4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관광체육부).....	31
49.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관광체육부).....	32
50.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관광체육부).....	32
51.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33
5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소방청).....	34
53.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34
54.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35
55.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	36

정부입법 예고

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9. 2. 11.
- 마감일자 : 2019. 3. 25.
-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소각재와 그 잔재물 등을 시멘트 등 비금속광물제품(골재, 유리, 시멘트 등) 또는 기타 비금속광물제품(아스콘, 고화제 등)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하는 강열감량 기준 및 염소화합물의 용출농도 기준을 합리적으로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소각재 등의 재활용 기준 개선(안 별표 5의3)
 - 1) 소각재 재활용시 강열감량 기준(현행 3%이하)을 소각시설의 소각재 강열감량 기준과 동일(5% 이하)하게 하되, 별도의 제품기준이 있는 경우(담 등에 사용되는 시멘트 제품, 3%)에는 이를 충족하도록 함
 - 2) 소각재를 고화제 제조로 재활용 하는 경우, 배출단계에서 염소화합물 용출농도기준(250.0mg/L 이내)를 초과해도 재활용 단계 중에 이를 준수하면 재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

2.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9. 2. 11.
- 마감일자 : 2019. 3. 25.
- 선원법이 개정('19.1.15 공포, '19.7.16 시행)됨에 따라 기본계획 등의 공포방식을 정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는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민원인의 편의 제고를 위하여 승하선공인 관할청 제한을 삭제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법 개정으로 선원에 대한 전차금과 임금의 상계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기존에 상제한 때에 지방청에 보고하도록 한 규정 삭제(안 제18조 삭제)

용과 면접교섭의 지원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집행권원 확보 위한 비양육부·모 주민등록 등·초본에 관한 행정정보 공동이용(안 제7조제1항 개정)
- 나. 비양육부·모 근무지에 관한 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에게 요청(안 제7조제2항 개정)

6.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 예고일자 : 2019. 2. 12.
- 마감일자 : 2019. 3. 25.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18.12.24. 공포, ' 19.6.25. 시행)에 따라 비양육부·모의주소와 근무지에 관한 정보이용과 면접교섭의 지원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면접교섭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안 제3조의2 신설)
- 나.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 개정(별지 제1호서식 개정)
- 다. 접수증 개정(별지 제2호서식 개정)
- 라. 면접교섭 지원 신청서 개정(별지 제2호의2서식 신설)

7.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 예고일자 : 2019. 2. 12.
- 마감일자 : 2019. 3. 25.

-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를 위해 금융회사등의 내부통제 의무를 강화하고, 과태료의 상한이 상향되는 등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 ('19.1.15 공포, 7.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금융회사등이 내부 업무지침에 규정해야 할 사항(안 제9조)

- 1) 신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자금세탁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절차 수립 의무,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해외소재 지점 등의 관리방안 등 금융회사등이 내부 업무지침에 규정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

나. 과태료 부과기준의 개정(별표2 제2호)

- 1) 법률상 과태료 상한이 상향됨에 따라 위반행위 별 과태료 부과 기준 금액을 규정한 시행령 별표를 개정함

다. 자료보관의무의 기산점인 ‘금융거래관계가 종료된 날’ 을 규정 (안 제10조의8)

- 1) ‘금융거래관계가 종료된 날’ 을 금융회사와 고객 간 금융거래 관계가 관계 법령, 약관 또는 합의등에 따라 계약기간의 만료, 해지권·해제권·취소권의 행사 등의 사유로 종료된 날로 규정함

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 예고일자 : 2019. 2. 12.
- 마감일자 : 2019. 3. 25.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장애인복지법상 1급 장애인을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으로 인정하였으나, 보건복지부가 장애등급제(1~6급)을 폐지(‘19.7월 시행)함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같은법 시행령 별표2(장애인장애구분표)에 해당할 경우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으로 인정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9. 숙련기술장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 예고일자 : 2019. 2. 12.
- 마감일자 : 2019. 3. 25.

- 숙련기술전수자 증서, 전수지원금 지급 개인별 대장, 계속종사지원금 지급 개인별 대장, 계속종사장려금 지급신청서, 기능경기대회 참가원서 사진 규격을 공공기관 제출 사진규격으로 통일하여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

고, 서식의 일부 내용을 현행화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숙련기술전수자 증서, 전수지원금 지급 개인별 대장, 계속종사지원금 지급 개인별 대장, 계속종사장려금 지급신청서, 기능경기대회 참가원서의 사진 규격을 여권사진 규격(3.5cm×4.5cm)으로 단일화하여 민원인의 편의 제고(국민권익위원회 의결 제 2015-341호, 공공기관 등 사진제출 관련 국민불편 해소 방안 관련)

나. 계속종사장려금 지급신청서 내용 중 “한국산업인력공단(기능장려팀)” 을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현 직제에 맞게 현행화

10.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 예고일자 : 2019. 2. 13.
- 마감일자 : 2019. 3. 25.

○ 주요내용

가. 청소년정책위원회 위원에 청소년을 일정 비율 이상 포함토록 하는 내용의 「청소년기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위원 선발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의 규정 필요

나. 청소년 상담사 응시자격 요건 개선을 통해 청소년 상담사 응시생들의 편의 제고

11.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9. 2. 13.
- 마감일자 : 2019. 3. 25.

○ 장기등의 범위에 ‘발 다리’ 등을 추가하고, 장기 기증 적출 이식 통계의 체계적 작성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던 일부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법률 제16256호, 2019. 1. 15. 개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식 가능한 ‘장기등’ 중 법률에 신설된 ‘손 및 팔’ 제외(안 제2

1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 예고일자 : 2019. 2. 13.
- 마감일자 : 2019. 3. 25.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18.12.24. 공포, ' 19.6.25. 시행)으로 대부업자의 대부자금에 대한 연체이자율을 제한하는 근거조항이 신설되었고, 연체이자율 제한과 관련한 사항을 동법시행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대부업자에 대한 연체이자율 제한 규정 신설(안 § 5)
 - 1) 대부계약 특성 등을 반영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연체이자율로 하고, 연 100분의 24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

1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 예고일자 : 2019. 2. 14.
- 마감일자 : 2019. 3. 26.
- 아동·청소년시설 운영자·취업(예정)자의 성범죄 경력 조회 민원 사무처리 시 구비서류의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하도록 명문화하고, 담당 공무원의 구비서류 확인사항 및 정보 주체의 동의란과 같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는 한편, 법률 개정으로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범죄가 추가(법 제8조의2 죄)됨에 따라 지급 금액 기준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성범죄 경력 조회 증빙서류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마련 등(안 제8조제4항 신설 및 별지 제9호~제9호의3 서식 개정)
 - 나.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범죄 추가에 따른 금액 기준 마련 등(안 제10조제2호 개정)

1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19. 2. 14.
- 마감일자 : 2019. 3. 6.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168호, 2018. 12. 31. 공포, 2019. 4.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국유재산의 임대료 경감 범위 및 방법을 정하고, 법 개정에 따른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국유재산의 임대료 경감 범위 및 방법(안 제18조의7)
 - 1) 국유재산의 임대료 경감은 해당 국유재산 임대료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이 정하도록 함.
 - 나. 용어 변경(안 제17조, 제18조의2제1항 및 제3항)
 - 1) 법 개정에 따라 “연료전지자동차”를 “수소전기자동차”로 변경함

17.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9. 2. 14.
- 마감일자 : 2019. 2. 28.
- 「종합부동산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율을 차등 적용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분납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과세형평성을 높이고 비효율적인 조세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합산이 배제되는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액제한 요건이 추가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신고서 및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18. 인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9. 2. 14.
- 마감일자 : 2019. 2. 28.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8호의 개정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모바일상품권으로서 권면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것에 대하여 인지세 과세가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비과세 상품권의 범위를 정비하는 한편, 납세자가 인지세 납부의무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인지세 납부관련 서식을 현행화 하려는 것임.

19.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9. 2. 14.
- 마감일자 : 2019. 2. 28.
- 금리수준을 반영하여 주택 등의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인상하고,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시 국외원천소득에서 빼는 간접비용의 산정방식을 명확히 규정하며,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직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주택 등의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과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개인간 소비대차계약의 최저이자율을 각각 1.8%에서 2.1%로 인상함(안 제23조 및 제57조)
 - 나.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시 국외원천소득에서 빼는 간접비용의 산정방법을 명확히 규정함. (안 제60조)
 - 다. 동거봉양 합가 양도소득세 특례가 인정되는 중증질환자 등의 범위를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중증질환자 등의 범위와 동일하게 규정함. (안 제61조의4)
 - 라. 주식등 양도차익 계산시 투자일임수수료 중 온라인으로 직접 거래할 때 부과하는 위탁매매수수료 이하이면서 부과기준이 약관 등에 명시되어 있는 위탁매매수수료 성격의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함. (안 제79조)

마.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초과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가 적용되는 직종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조정함.(안 별표 2 및 별표 2의2)

20. 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9. 2. 14.
- 마감일자 : 2019. 2. 28.
- 세무대리 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세무사·세무대리업무등록신청서 및 등록부, 세무사 징계요구서 서식에 공직퇴임세무사 여부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세무사 및 공인회계사가 소속협회에 작성·제출하여야 하는 업무실적 내역서 서식을 신설하는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9. 2. 14.
- 마감일자 : 2019. 2. 28.
- 성실공익법인의 확인 기관이 변경되고, 다수인이 부동산을 무상사용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소유자와 친족관계가 있는 사용자의 경우에는 소유자와의 근친 관계 등을 고려하여 대표사용자에게 과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공동주택평가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이 여러 채인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가장 적은 주택을 유사한 재산으로 보아 해당 재산의 시가를 평가대상 공동주택의 시가로 인정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에 따른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성실공익법인 여부를 확인하는 기관을 기획재정부 장관에서 국세청장으로 변경하도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성실공익법인 확인 기관을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으로 변경하고, 이에 부합하도록 신청 절차 등을 변경함.

- 나. 수인이 부동산을 무상사용시 해당 부동산사용자들이 부동산소유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부동산사용자들중 부동산소유자와 최근친인자를 대표사용자로 하고 최근친인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최연장자를 대표사용자로 보도록 부동산 무상사용시 대표사용자 판단 기준을 신설함.
- 다. 공동주택평가시 평가대상 공동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의 주택으로서 주거전용면적의 차이등이 100분의 5 이내인 공동주택이 여러 채인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가장 적은 주택을 유사한 재산으로 보아 해당 재산의 시가를 평가대상 공동주택의 시가로 인정함.

22.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9. 2. 14. ● 마감일자 : 2019. 2. 28.
- 소규모주류제조면허에 과실주를 추가하고 시설기준에서 유량계를 제외하여 소규모주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생산 중단 주류의 범위를 정하는 한편, 주류 출고가격 신고의 절차적 사항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소규모주류제조면허에 과실주를 추가
 - 나. 소규모주류제조자의 제조장 시설기준에서 유량계 제외
 - 다. 중소기업 맥주제조자의 맥주에 대하여 특정주류도매업을 통한 유통 허용
 - 라. 생산 중단 주류의 범위 규정
 - 마. 주류 출고가격 신고에 관한 절차적 사항을 규정

23.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9. 2. 14. ● 마감일자 : 2019. 2. 28.
- 발전연료의 미세먼지 관련 환경비용을 반영하여 발전용 천연가스와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기본세율 및 탄력세율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개별소비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발전용 천연가스의 범위 및 대상을 규정하려는 것임

24.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 예고일자 : 2019. 2. 15. • 마감일자 : 2019. 2. 25.
- ‘교육적 선도’ 를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 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보호지원의 목적 및 내용(방법)을 법률에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청소년복지 지원법」(법률 제15988호, 2018.12.18.공포, 2019.3.19.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보호지원의 방법 등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교육적 선도’ 를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 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상담, 교육, 자원봉사 등 보호지원의 방법 규정(안 제 11조제2항 신설)
 - 나. ‘특별자치시’ 를 추가하는 용어 정비

25.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

- 예고일자 : 2019. 2. 15. • 마감일자 : 2019. 3. 27.
- 2018. 12. 18. 형법 제10조제2항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형이 필요적 감경에서 임의적 감경으로 개정됨에 따라 치료감호 및 치료명령 대상 규정에서 형의 감경 요건을 삭제하고, 치료감호소 의사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피치료감호자등이 중대한 범법행위 또는 규율위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수용질서를 문란케 하는 중대한 행위를 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뿐 아니라 일반의사의 지시에 따라 피치료감호자등을 격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26.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9. 2. 15. • 마감일자 : 2019. 3. 27.
- 수직중축 리모델링을 위해 구조설계단계에서 적용한 보강설계 내용이 조합원 이주後 실시하는 2차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변경되어 조합원의 추가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주前 부담금 확정 총회안전에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부담금 발생 가능성을 상정토록 의무화하여

조합원의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고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설계변경 가능성 총회 안전 상정의무화(안 제7조제5항)

- 1)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위해 구조설계단계에서 적용한 보강설계 내용이 조합원 이주後 실시하는 2차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변경되어 조합원의 추가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인지하고 사업의 적정성 등을 판단하도록 이주前 부담금 확정 총회 안전에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부담금발생 가능성을 상정하도록 함.

27.물관리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9. 2. 18.
- 마감일자 : 2019. 4. 1.

- 국토교통부가 수행하였던 수량관리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8년 5월 국회를 통과하여 수량과 수질을 환경부가 균형있게 관리하는 물관리 일원화가 이루어졌음. 동시에 물관리의 최상위 법률로서 물관리 이념과 기본원칙 등을 규정하는 「물관리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5653호, 2018.6.12. 공포, 2019.6.13. 시행)되어 통합 물관리의 기틀이 마련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물분쟁 조정 신청과 관련한 서식을 규정(안 제2조 및 별지 제1호부터 제3호서식)

- 1) 물분쟁의 조정신청을 위하여 필요한 물분쟁 조정 신청서, 조정 신청 통지서, 조정변경 통지서를 규정함

나. 선정대표자 선정과 관련한 서식을 규정(안 제3조, 별지 제4호 및 제5호서식)

- 1) 다수인이 물분쟁 조정의 당사자가 될 때 선정대표자를 선정하는 경우 물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하는 통지서와 해임·변경 통지서를 규정함

다. 대리인 선정과 관련한 서식을 규정(안 제4조, 별지 제6호서식)

- 1) 당사자가 물분쟁 조정 과정에서 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물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대리인 선임 허가 신청서를 규정함
- 라. 조정의 종료를 통보하는 서식을 규정(안 제5조, 별지 제7호서식)
 - 1) 물관리위원회가 물분쟁 조정을 각하하거나 종료하는 경우 당사자등과 피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하는 의결서를 규정함
- 마. 출석 및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서식을 규정(안 제6조, 별지 제8호 및 제9호서식)
 - 1) 물관리위원회가 당사자등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 및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 필요한 출석요구서와 자료제출 요구서를 규정함
- 바. 조정안과 조정조서와 관련한 서식을 규정(안 제7조, 별지 제10호 및 제11호서식)
 - 1) 물관리위원회가 물분쟁 조정안을 마련하거나 조정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필요한 조정안과 조정 조서 서식을 규정함

28.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9. 2. 18.
- 마감일자 : 2019. 4. 1.
- 자살보도 권고기준 및 이행확보 방안을 자살예방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자살위험자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119 구조 구급대원 등에게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자살자 가족 등의 자조모임을 지원하는 한편, 자살예방에 관한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찰 소방서 등의 정보보유기관과 자살예방업무를 수행하는 자살예방센터 등의 자살예방 업무 수행기관 간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려는 내용으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899호, 2018. 12. 11.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제 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신설)

나. 자살시도자등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제6조 신설)

다. 자살예방 상담 교육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정함(안제9조 신설)

29.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9. 2. 18.

• 마감일자 : 2019. 4. 1.

- 자살보도 권고기준 및 이행확보 방안을 자살예방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자살위험자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119 구조 구급대원 등에게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자살자 가족 등의 자조모임을 지원하는 한편, 자살예방에 관한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찰 소방서 등의 정보보유기관과 자살예방업무를 수행하는 자살예방센터 등의 자살예방 업무 수행기관 간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려는 내용으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899호, 2018. 12. 11.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0.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방송통신위원회)

• 예고일자 : 2019. 2. 18.

• 마감일자 : 2019. 4. 1.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 18.12.24. 공포, ' 19.6.25 시행)에 따라,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규정

○ 주요내용

가. 법정대리인 동의의 확인방법(안 제27조의2 신설)

- 1) 위치정보사업자등이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 수집 이용 제공을 위해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써, 휴대전화 메시지 · 신용카드 등을 통한 확인(인터넷사이트

를 통한 동의의 경우), 서면, 전화, 전자우편, 그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을 활용하도록 규정

3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방송통신위원회)

- 예고일자 : 2019. 2. 18.
- 마감일자 : 2019. 4. 1.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의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의무화 : '18.6.12 공포 및 ' 19.6.13 시행,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관련 방통위의 시책 마련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만14세 미만 아동에 대한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 확인 : ' 18.12.24. 공포, ' 19.6.25 시행)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활동 지원 등 시책 마련 등에 필요한 사항과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법정대리인 동의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규정하는 한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개인정보보호 법령 위반으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보험이나 공제에 가입 또는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함에 따라 그 보험(공제) 가입 등의 범위와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개인정보보호의 촉진 및 지원(안 제16조의2 신설)
 -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 활동의 촉진 지원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자료제출 요청 및 의견수렴, 행정적 재정적 지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 등의 개인정보보호 활동계획의 이행결과 평가 등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나. 법정대리인 동의의 확인방법(안 제17조의2 신설)
 -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을 위해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써, 휴대 전화 메시지·신용카드 등을 통한 확인(인터넷사이트를 통한 동의의 경우), 서면, 전화, 전자우편, 그밖에 이에 준

하는 방법을 활용하도록 규정

다.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 준비금 적립 등의 범위 및 기준(안 제18조의2, 별표 1의3 신설, 별표 9 제2호버목 신설)

- 1)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수가 전년도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평균 1,000명 이 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해 손해배상책임보험이나 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을 의무화
- 2) 보험(공제)의 최저가입금액(또는 준비금 최저적립금액)은 사업자가 저장·관리하는 ‘이용자수’ 및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 설정하여, 최소 0.5억원~최대 10억원으로 정함(별표 1의3)
- 3)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위반 횟수와 무관하게 과태료 2천만원 부과

32.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예고일자 : 2019. 2. 18.

• 마감일자 : 2019. 4. 1.

○ 기간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에 따라 적립되는 경제상 이익인 마일리지 제공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고, 이용자에게 경제상의 이익의 적립 현황 등을 알리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5858호, 2018. 12. 11. 공포, 2019. 6. 12. 시행)됨에 따라 경제상의 이익에 대한 고지의 내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경제상의 이익 고지의 내용과 방법 신설(안 제37조의9)

- 1) 기간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에 따라 적립되는 경제상의 이익인 마일리지를 이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적립방법, 사용범위, 이용방법, 유효기간, 적립·사용·소멸점수등 경제상의 이익에 관한 내용을 고지하도록 함(안 제37조의9조제1항)
- 2) 기간통신사업자는 경제상의 이익에 관한 내용을 홈페이지에 상시 안내하고, 적립·사용·소멸점수 등 주요현황을 매월 이용요

금 청구서에 안내하는 한편, 최근 1년 이내 사용이력이 없는 이용자에게는 분기별 문자로 안내하도록 함(안 제37조의9조제2항)

나. 과태료의 상세 부과기준 신설(안 별표 11 제2호 타목 신설)

- 1) 법 제32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경제상의 이익의 적립 현황 등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횟수에 따라 1차 위반 시 350만원, 2차 위반 시 7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33. 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외교부)

- 예고일자 : 2019. 2. 19. • 마감일자 : 2019. 4. 1.
- 여권 분실 경위 확인 대상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들의 여권 관리 인식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분실 경위 기재란 구체화
 - 1) △분실 일자 및 추정시각, △분실 세부 장소, △분실 후 조치사항, △목적자(있을 경우 기재), 분실 사유 증빙 자료(가능할 경우 첨부), △최근 5년간 여권 분실 횟수 및 경위, △분실 의견 진술을 기재하도록 구성
 - * 상습분실자 경위 확인시, 여권 분실과 범죄 연관성 여부를 용이하게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필요하다는 경찰청 의견 반영
 - 나. 유의사항 및 서명란 구체화
 - 1) 여권 분실시 △사용불가, △유효기간 제한, △경찰청 경위 조사 등 불이익 안내
 - 2) 기재 내용이 사실임을 약속하는 서명란 각각 구성

34.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 예고일자 : 2019. 2. 19. • 마감일자 : 2019. 4. 1.
-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18.12.18. 공포, ' 19.6.19. 시행)에 따라 미혼

모 또는 미혼부와 그 자녀 대상건강관리 지원 기준 및 절차, 미혼모자 가족복지시설 입소 미혼모와 그 자녀 대상 의료비 추가 지원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고, 사회복지사업법 개정('17.10.24 개정, '18.4.25 시행) 사항을 반영하여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 자격기준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미혼모·부와 그 자녀 건강관리 지원 기준(안 제17조의5 제1항)
- 나. 미혼모·부와 그 자녀 건강관리 지원 방법(안 제17조의5 제2항)
- 다. 시설 입소 미혼모와 그 자녀 의료비 지원 절차(안 17조의5 제3항)
- 라. 시설 입소 미혼모와 그 자녀 의료비의 지원 범위 및 방법(안 17조의5 제4항)

35.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 예고일자 : 2019. 2. 19.
- 마감일자 : 2019. 4. 1.

○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18.12.18. 공포, ' 19.6.19. 시행)에 따라 미혼모 또는 미혼부와 그 자녀 대상건강관리 지원 기준 및 절차, 미혼모자가 가족복지시설 입소 미혼모와 그 자녀 대상 의료비 추가 지원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고, 사회복지사업법 개정('17.10.24 개정, '18.4.25 시행) 사항을 반영하여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 자격기준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시설 입소 미혼모와 그 자녀 의료비의 지원 범위 및 방법(안 17조의5 제4항)
- 나.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별표 4] 개정)

36.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방송통신위원회)

- 예고일자 : 2019. 2. 19.
- 마감일자 : 2019. 4. 1.

○ 통신분쟁조정제도 도입 및 금지행위에 비필수앱 삭제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추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19.6.12 시행)과 부가통신사업자의 음란정보 유통방지 및 전기통신역무 중단 시 손해배상 규정 등을 신설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19.6.25 시행)됨에 따라 법률

이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7.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 예고일자 : 2019. 2. 19.
- 마감일자 : 2019. 4. 1.
- 보험회사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핀테크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보험약관이해도 평가에 보험소비자 참여를 확대하여 보험약관 사후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그간 제도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보험업 허가시 임원 결격사유 심사대상 정비 (제10조제1항)
 - 1) 보험업 허가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심사 대상을 받기인에서 다른 금융업권과 동일하게 임원으로 정비함
 - 나. 보험업 허가시 업무위탁 허용 명확화 (제10조제2항)
 - 1) 보험업 허가시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위탁 허용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와 관련된 인적·물적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함
 - 다. 사채발행한도 규제 대상에 신종자본증권 포함 (제58조제3항)
 - 1) 사채발행한도 규제 대상에 신종자본증권을 포함하여 규제공백을 정비함
 - 라. 핀테크 자회사 소유근거 마련 (제59조제2항)
 - 1) 보험회사가 금융위 승인을 받아 보험업 관련 핀테크 업체를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마. 자회사 소유 승인 심사기간 정비 (제59조제4항)
 - 1) 자회사 소유 승인 심사시 자료 보완이 필요한 등 예외적인 경우 심사 기간 연장근거 마련함
 - 바.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개선 (제71조의6)
 - 1)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대상 중 보험소비자 대표를 증원하고, 평가대행기관의 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선발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도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를 실시함

사. 고유식별정보 처리근거 마련 (제102조)

- 1)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권리금장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증보험회사가 임대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보험다모아」에서 자동차보험료를 조회한 소비자가 보험회사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one-stop 자동차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손해보험회사의 주민등록번호 처리근거 마련함

아. 금융감독원장에 인가 심사 업무 업무 위탁 (별표8)

- 1) 금융감독원장에 보험회사의 해산 결의, 합병, 보험계약 이전, 영업 양도·양수의 인가에 대한 심사업무를 위탁함

자.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별표9)

- 1) 법인보험대리점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기준금액을 1천만원으로 정함

38.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9. 2. 19.
- 마감일자 : 2019. 4. 2.
- 동일한 학위를 취득하였음에도 근무하는 대학의 종류에 따라 민간위원 위촉 대상에서 차별을 받는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 완화하여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 민간전문가 위촉기준 완화(안 제8조 제1호)
 - 1) 현행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민간전문가의 위촉기준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일반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근무한 자로 한정하던 것을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등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근무한 자로 완화

3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예고일자 : 2019. 2. 20.

• 마감일자 : 2019. 4. 2.

○ 기업의 정보보안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임원급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및 신고, 정보보호 업무 외 겸직 금지와 자격요건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제외 대상자의 범위(안 제36조의6제1항)

1) 임원급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신고해야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에서 소기업, 소상공인을 제외함

2) 단, 소기업 중 정보통신 관련성이 높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 대상자, 전기통신사업자는 최고책임자를 지정·신고하도록 함

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겸직금지(안 제36조의6제2항 신설)

1)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를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자,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 중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자로 함

다.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자격요건(안 제36조의6제3항 신설)

1)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자격요건을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관련 전문지식이나 실무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함

2) 단, 겸직이 금지되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상근하는 자로서 타 회사의 임직원이 아닌 자로 하고, 4년 이상의 정보보호 분야 또는 5년 이상 정보기술 분야(정보보호 2년 포함)의 경력을 구비 하도록 함

4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예고일자 : 2019. 2. 20.
- 마감일자 : 2019. 4. 2.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관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신고서식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신고 서식 변경(안 별지 제2호서식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서)
 -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의 개정에 따라 신고 서식에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직책, 겸직 여부, 관련 업무경력 등 관련 항목을 추가

41.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

- 예고일자 : 2019. 2. 21.
- 마감일자 : 2019. 4. 2.
- 청년 실업난과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를 위해 성과보상기금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 재직근로자에서 신규채용 청년근로자까지 확대하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이 개정(' 18.12.11)됨에 따라 법 시행(' 19.6.1)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성과보상기금 명칭 변경 (안 제26조의2, 제30조의2, 제30조의7)
 - 1) 법 개정에 따른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을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으로 명칭 변경
 - 나. 성과보상기금 운용위원회의 구성원 추가 (안 제30조의3)
 - 1) 성과보상기금에 ' 16년부터 참여하고 있는 고용노동부를 운용위원회 구성원으로 추가
 - 다. 성과보상기금 지원 대상 범위를 공제규정에 포함되도록 명문화 (안 제30조의8제1항1호)
 - 1) 중소기업 재직근로자 대상의 성과보상기금에 신규 채용 청년근

- 1) 원료물질 · 공정부산물을 수출입하려는 자는 방사능농도 분석결과서를 제출하도록 함
- 2) 가공제품을 수출입하려는 자는 방사능농도 분석결과서, 가공제품의 종류, 모델명 및 수량을 제출하도록 함

다. 유통현황 기록 보관 및 보고에 관한 사항 규정(안 별표)

- 1)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취득 판매 등의 유통현황을 매분기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보고하도록 함
- 2) 가공제품 제조 판매 현황을 매분기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보고하도록 함
- 3) 건강진단기록을 건강진단을 실시한 해당 분기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보고하도록 함
- 4) 원료물질 등 유통현황 및 건강진단기록을 5년간 보관하도록 함

44.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19. 2. 21.
- 마감일자 : 2019. 4. 2.
- 과학기술의 발전과 그 기술이 우주로 확대되어감에 따라, 단위의 정의 방식이 변하지 않는 상수를 활용한 새로운 방식으로 국제도량형총회*(CGPM)에서 기본단위를 재정의 (‘18.11.16.의결, ’ 19.5.20.발효)하고 국제단위계의 측정단위 정의는 미터협약에 의해 국제도량형총회(CGPM) 의결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국제도량형총회의 개정내용을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에 반영하고 모호한 표현들을 명확히 하여 과학기술계, 산업계 및 국제거래 등에서 기본이 되는 국제단위 사용을 촉진하여 국가 측정기술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임.

4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방송통신위원회)

- 예고일자 : 2019. 2. 21.
- 마감일자 : 2019. 2. 26.
- 국외 이전 및 재이전 시 보호조치 위반의 경우에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이 개정(‘18.9.18일 공포, ’19.3.19일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외이전 및 재이전 시 보호조치 의무위반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시행령 별표9 개정)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거나 이미 국외이전된 개인정보를 제3국으로 재이전 시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정보통신망법에서 과태료 상한금액을 3천만원으로 규정

2) 이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상 유사 입법례*를 참고하여 위반횟수 별로 차등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은 과태료 상한금액이 3천만원인 경우에 1회 위반 시 1천만원, 2회 위반시 2천만원, 3회 이상 위반시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46. 농업통계조사 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9. 2. 21.
- 마감일자 : 2019. 4. 3.

○ 현행 「농업통계조사규칙」 제13조는 농업통계조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작물 등의 피해에 대하여 예산 및 표본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금액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상금의 지급순위를 경작자,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순으로 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경작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은 실질적으로 가족의 일원이었다고 하더라도, 법률혼 관계인 배우자와 달리 피해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는 차별이 있음. 「농업통계조사규칙」에서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취지는 농업통계조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의 성격이 강한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지급 대상에서 배제할 합리적인 사유가 없음. 또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등 급여의 지급과 관련된 유사 입법례의 경우, 대부분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유족 등의 범위에 포함하여 급여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음으로 이를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경작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도 법률혼 관계인 배우자와 동일하게 피해보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개정(안 제13조제2항제2호)

47.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9. 2. 21.

• 마감일자 : 2019. 4. 5.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2조(과태료)가 개정(2018.12.18.)되어 학교안전공제회·학교안전공제중앙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가 ‘5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되고, 과태료 부과 근거 법조문 체계가 4개 ‘호’에서 3개 ‘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그에 맞춰 법시행령 [별표 8]의 과태료 부과 개별기준을 개정

○ 주요내용

가.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 상향(안 별표 8 개정)

- 1) 학교안전공제회·학교안전공제중앙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에 대한 과태료를 1회 위반시 10만원을 100만원으로, 2회 위반시 30만원을 300만원으로, 3회 이상 위반시 50만원을 500만원으로 상향

나. 과태료 부과 ‘근거 법조문’ 변경(안 별표 8 개정)

- 1) 개별 위반 행위별 과태료 부과 ‘근거 법조문’을 법률 제72조의 체계(4개 호→ 3개 항 체계로 변경)에 맞춰 변경

4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관광체육부)

• 예고일자 : 2019. 2. 22.

• 마감일자 : 2019. 4. 3.

- 합기도는 13세 이하의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시법’) 상

등록·신고 체육시설업에 해당하지 않아 「도로교통법」 상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의무가 없어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이에 합기도를 신고 체육시설업인 체육도장업에 포함시킴으로써 체시법상의 시설, 안전기준과 합기도장에서 운영하는 통학버스를 「도로교통법」 상 어린이 통학버스 규정을 적용을 받게 함으로써 안전한 이용을 도모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합기도를 체육도장업에 추가(현행 제6조 개정)

49.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관광체육부)

- 예고일자 : 2019. 2. 22.
- 마감일자 : 2019. 4. 3.

○ 「관광진흥법」 개정(법률 제15860호, 2018.12.11. 공포, 2019. 6.12. 시행)으로 카지노업의 휴폐업 시사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이 부과되고, 동 법 제54조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아 관광지등을 개발하려는 자에 대한 토지매입 승인 절차 등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게 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관광지등을 개발하려는 자는 조성사업용 토지의 매입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47조의2 신설)
- 나. 카지노업 휴폐업 사전신고 불이행으로 인한 행정처분 기준을 규정함 (안 별표 2)

50.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관광체육부)

- 예고일자 : 2019. 2. 22.
- 마감일자 : 2019. 4. 3.

○ 「관광진흥법」 개정(법률 제15860호, 2018.12.11. 공포, 2019. 6.12. 시행)으로 카지노업의 휴폐업 시사전신고 의무가 부과되고, 동 법 제54조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아 관광지등을 개발하려는 자에 대한 토지매입 승인 절차 등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게 됨에 따라 관련 조문

을 정비하고자 함. 또한, 관광지등 조성계획 수립 시 토지이용계획은 6개 시설지구로 구분하고 있어 토지이용 상 경직성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카지노업 휴폐업 사전신고의 절차를 규정하고, 신고 등에 필요한 별지 서식을 「행정업무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2017.10.17 개정)의 서식 설계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함(안 제17조제2항 신설 및 별지 제24호 서식 개정)

나. 운동·오락시설지구와 휴양·문화시설지구를 관광 휴양·오락시설지구로 통합하여 규정함(안 제60조제1항제1호가목 개정)

다. ‘한국토지공사법’이 폐지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 제정(‘09.5)되어 관련 법과 기관명칭을 정정함(안 제61조제1항제2호 개정)

라.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관광지등을 개발하려는 자는 조성사업용 토지매입을 승인받으려 할 때에는 별지 제41호의4 서식에 따라 승인신청토록 함(안 제62조의2 신설)

51.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9. 2. 22.
- 마감일자 : 2019. 4. 3.

○ 인감증명 제출요구 사무 감축을 위해 「사립학교법 시행령」상 ‘인감증명’ 요구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하고, 사학비리 근절과 관련하여 사학법인 임원 취임의 차단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기 위해 「사립학교법」 제22조에 따른 학교법인 임원결격 확인을 위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 처리의 근거를 마련하며, 「사립학교법」 제7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세부적인 부과기준을 일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법인 설립 관련 인감증명서 대체(안 제3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조제1항제5호)

1) 시행령에 따라 요구되는 학교법인 설립 관련 첨부서류 중 ‘인

감증명' 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로 대체

나. 고유식별정보처리 대상에 “법인의 임원 결격사유 사무” 추가
(안 제28조의2제4호)

1) 관할청 등이 법 제22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
다. 과태료 부과를 위한 세부 기준 마련(안 제29조 및 별표2)

1) 법 제74조 제2항에서 제4항까지의 과태료에 대한 세부적인 부과 기준 마련

5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소방청)

• 예고일자 : 2019. 1. 11.

• 마감일자 : 2019. 2. 20.

○ ‘18.10.16. 상위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그 후속조치로 소방안전교육의 시기와 횟수를 상위 법률에 따라 명확히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다중이용업주가 변경되는 경우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시기를 상위 법률에 따라 허가관청에서 다중이용업주의 변경신고 또는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하기 전까지로 명확히 함.

나. 소방안전교육의 횟수를 “2년에 1회 이상” 이란 문구를 추가하여 상위 법률개정에 따라 정비하고자 함.

53.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9. 1. 11.

• 마감일자 : 2019. 2. 20.

○ 경제적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6세 미만의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2019년 9월부터 아동수당지급 대상을 7세 미만의 아동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동수당법」이 개정(2018. 12. 27. 국회 본회의 의결)됨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을 위해 규정한 소득·재산 조사 관련 규정 등을 삭제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정 삭제(제2조 삭제)

- 1) 경제적 수준에 관계없이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아동수당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소득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가구의 아동을 아동수당 지급 대상으로 정한 규정을 삭제

나. 아동수당 지급 금액의 감액 규정 삭제(제3조 삭제)

- 1) 수급아동의 소득액이 선정기준액에 근접한 경우 아동수당 지급 금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모든 수급아동에게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등없이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 하도록 함.

다.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관련 규정 삭제(제5조, 제8조 삭제)

- 1) 아동수당을 신청한 보호자 및 그 가구원의 소득액을 조사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

라. 소득·재산 조사 관련 자료 요청 규정 삭제(제7조 삭제)

- 1) 아동수당을 신청한 보호자 및 가구원의 소득·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

54.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9. 1. 11.
- 마감일자 : 2019. 2. 20.

- 경제적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6세 미만의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 하고, 2019년 9월부터 아동수당지급 대상을 7세 미만의 아동으로 확대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동수당법」이 개정(2018. 12. 27. 국회 본회의 의결)됨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을 위해 규정한 소득·재산 조사 관련 규정 등을 삭제하고 아동수당 관련 정보의 제공 대상을 7세 미만의 아동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득 및 재산의 환산소득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삭제 (제2조 삭제)

- 1) 경제적 수준에 관계없이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아동수당법이

개정됨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대상의 선정을 위한 소득 및 재산의 환산소득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을 삭제

나. 아동수당 관련 정보 제공의 대상 확대(제3조 수정)

1) 2019년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7세 미만의 아동으로 확대하기로 아동수당법이 개정됨에 따라 아동수당 관련 정보의 제공 대상을 7세 미만의 아동으로 확대

다. 금융정보등의 제공 동의 서면의 서식 삭제(제5조제2항, 제16조제2호 삭제)

1) 아동수당을 신청한 보호자 및 그 가구원의 소득액을 조사하기 위해 제출하도록 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 서면 관련 규정을 삭제

라. 아동수당의 지급 여부 등 결정 통지 기간을 단축(제7조제1항)

1) 아동수당의 지급 여부 결정을 위한 소득·재산 조사를 하지 않게 됨에 따라 그 결정 통지 기간을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수정

55.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

- 예고일자 : 2019. 1. 11.
- 마감일자 : 2019. 1. 31.

○ 집합건물 관리인 선임 신고제도, 관리비 등의 장부 작성·보관 의무, 회계감사, 지방자치단체장의 감독 제도를 신설하고, 관리비 보고의무를 강화하는 등으로 집합건물 관리가 보다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영업 환경을 조성하며, 구분점포 성립에 필요한 바닥면적 요건을 삭제하여 소상공인이 보다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공용부분의 변경 및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의결정족수를 완화하며, 권리변동 있는 공용부분의 변경 제도를 신설하여 원활한 집합건물 관리를 도모하는 한편, 분양자의 최초 관리단집회 개최 통지 의무 신설과 임시관리인 선임 청구 제도 신설을 통해 집합건물 관리의 공백을 방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